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555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역무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송달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 강화 및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우편 제도 신설(안 제25조제1항제22호)

기본적 우편서비스인 보편적서비스의 특수취급 종류에 '선거우편물 특수취급제도'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post.go.kr)